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516호
- 나. 제안자 : 최호정의원의외 10명(찬성의원 8명)
- 다. 제안일자 : 2016년 11월 10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주간’을 지정·운영 하는 등 지방분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위원을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본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9조).
- 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 임기 내임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기념 등을 위해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자치주간으로 지정·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분권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주관을 지정하는 등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정비해 지방분권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방분권 촉진 경과

-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각종 규제와 통제 속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지방분권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활동을 펼쳐왔음.
- 이와 함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은 낮고, 중앙집권적인 자원 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하기만 함.
-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추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계획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정치적 필요성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되면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분권촉진과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비

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지난 2015년 4월 분권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나 자치사무의 확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권과 관련한 권한이나 책임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전속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한계가 있음.

다. 지방분권협의회 운영개선 (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 안 제9조는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을 수정해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시는 지난 해 4월 근거 조례의 제정 이후 시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8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이후 2회의 자문회의와 전국토론회, 지방분권 토론회를 각 1회씩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참고자료).
- 다만, 지방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 등 시의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시장의 자문기구인 협의회의 특성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참여가 배제될 경우 협의회의 의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담당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지방분권 업무와 관련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협의회 활동의 시정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됨.
- 이 밖에 안 제9조의2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해 협의회 위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해촉 후 새로운 위원 선임을 통해 협의회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시가 설치·운영중인 많은 자문기구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고려할 때, 해촉근거 조항을 두

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곤란한 위원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협의회 활동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라. 주민자치주간의 지정·운영(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현재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된 10월 29일을 전후한 7일간(10월 25일~10월 31일)을 ‘지방자치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2012년 개정을 통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과 지방자치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10월 29일을 전후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을 ‘주민자치주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시 자체적인 기념행사와 연구발표, 유공자 격려 등 지방분권 촉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행정자치부 중심의 기존 ‘지방자치의 날’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년 7일간 ‘주민자치주간’을 정하고 각종 부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분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생년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1	지방자치 (도시행정)	 강 문 희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졸업 	
2	지방조직	 고 경 훈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 3.0 지원센터 소장 · 고려대 및 동 대학원 졸업 	
3	지방자치	 김 성 호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 (전)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청주대 및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 	
4	중앙·지방관계 (위원장)	 김 순 은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캔트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5	언론	 김 의 겸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선임기자(논설위원) ·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번호	분야	성명	생년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6	언론	 문 소 영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사회2부장 · (전) 논설위원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 	
7	시의원	 박 양 숙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국회정책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 	
8	지방세	 박 정 수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서울대 경제학과 및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졸 	
9	지방재정	 배 인 명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 (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 성균관대 및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졸 	
10	지방자치 (일본자치)	 소 순 창	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전)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도쿄대학교 대학원 졸 	
11	NGO	 이 국 운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동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울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 	
12	지방자치 법 (부위원장)	 이 기 우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 동국대 및 원스터대학교 대학원 졸 	

연 번	분야	성 명	생년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13	지방자치 (공동체)	 이 종 수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 및 웨일드대학교 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4	지방자치 (정부론)	 이 종 원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행정학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졸업 	
15	지방자치	 정 희 운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연구원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 캐나다 워터루대학교 대학원 졸업 	
16	지방자치 (지방행정)	 최 호 진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행정연구원 정보자료실장 명지대 대학원 졸업 	
17	지방자치 (공공관리)	 최 흥 석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관리 포럼」 위원 고려대 및 시리큐스대학교 대학원 졸업 	
18	지방자치 (도시행정)	 흥 준 현	1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 학회장 서울대 및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졸업 	